

재정위원회 규정

제정 2022. 01. 01.

개정 2022. 10. 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의3에 의거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위원회의 기능) ①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

1. 대학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인 및 법인 산하기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2.10.05)**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에 관한 사항 (개정 22.10.05)**
4.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 각호에 대한 의결안건 처리 시 재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

제3조(재정위원회의 구성) ①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일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총 5명으로 하고, 이사장이 추천한 임원 1명과 상지대학교 부총장, 교육연구처장, 기획평가처장, 법인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일반 위원은 총 6명으로 다음 각호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반수 교수단체가 추천하는 교원 2인
2.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직원 1인
3.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재학생 1인
4. 총동문회가 추천하는 1인
5.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인

제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일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일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보궐 일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①재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재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그 임기는 재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위원장은 재정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이사장, 총장,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2.10.05)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재정위원회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부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①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회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내규) 재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